##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972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 강선영·강대식·유용원

박준태 • 고동진 • 이인선

최수진 · 서명옥 · 한기호

배준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8월, 「군인사법」에서 군 영창제도가 위헌성 및 인권침해로 폐지되었음. 그러나 의무복무의 한 형태인 "전환복무자"(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창 징계처분이 존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징계의 종류를 영창(營倉)·근신(謹愼) 및 견책(譴責)으로 정하고 있고, 영창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소방대 또는 그 밖의 구금장에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소방원의 징계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여 법체계의 적합 성을 확립하고 전환복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삭제).

법률 제 호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영창(營倉)·근신(謹愼)"을 "근신(謹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징계) ① 의무소방원에 대	제5조(징계) ①
한 징계는 <u>영창(營倉) · 근신(謹</u>	<u>근신(謹愼)</u>
<u>愼)</u> 및 견책(譴責)으로 한다.	
② 영창은 의무소방대 또는 그	<u>&lt;삭 제&gt;</u>
밖의 구금장에 구금함을 말하	
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	
<u>다.</u>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